

부산지방법원 2021. 1. 5 선고 2019가단3306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기수연, 김성완, 박은식, 이
송희, 황병일

피 고 1. B

2.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, 김동혁, 정서연,
함호진

변론 종결 2020. 12. 1.

판결 선고 2021. 1. 5.

주 문

1.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취지 :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

8. 24. 체결된 매매계약을 70,990,2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B,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,990,2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 C은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부산 기장군 F 소재 주식회사 E(2018. 12. 19. 상호 변경, 변경 후 상호 :D, 이하 'E'라 함)에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여 E에 대하여 70,990,216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, E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아 2018. 4. 5. 부산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. 8. 13. E가 원고에게 원금 70,990,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19. 9. 3.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함)은 피고 B의 소유였으나 위 피고는 2015. 7. 15. E에게 2015. 6. 18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E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5. 10. 29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,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 다. E는 2016. 8. 24. 주식회사 D(이하 'D'라 함)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6. 18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. 주식회사 D는 2017. 4. 10. 위 나. 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여 말소등기를 마쳤다.

라. D는 2017. 4. 10.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제1부동산'이라 함) 중 892분의 631.8 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3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제3부동산'이라 함)에 관하여 2017. 3. 16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, 2018. 6. 26. 피고

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446분의 130.1 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2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제2부동산'이라 함)에 관하여 2018.6. 1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. 한편, 피고 B은 2018. 6. 26.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92분의 631.8 지분 및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8. 6. 1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, 갑제8호증 내지 갑제11호증, 을가제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 내용

(1) 주위적 청구

E는 원고에 대하여 70,990,216원의 물품대금채무(이하 '이 사건 물품대금채무'라 함)가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. 6. 18.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행위'라 함)하였으므로, 이 사건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(2) 예비적 청구

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당시인 2016. 8. 24.에 E의 임원은 H과 피고 C이고, D의 임원은 H, I 및 피고 C인바, E와 D의 임원은 피고 C과 그의 친인척인 H으로 동일하므로, E 및 D는 각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인 피고 C과 H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여왔다.

E는 피고 C 등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원고 외에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,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2016. 8. 24. D와 통정하여 D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는바,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. 그런데,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무권리자라고 할것인데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고, 그 뒤 피고 B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92분의 631.8 지분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,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

처분한 행위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다.

따라서 E는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피고 C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.

그런데, E는 현재 자신 명의의 부동산은 전혀 없는 반면 원고의 물품대금 70,990,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비롯하여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현재 무자력상태인데도 피고 C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인 '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'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,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피고 C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바이다.

그렇다면 피고 C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(1)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7. 9. 21.자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).

갑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은 2017. 10.31. 기준으로 70,990,2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6. 8. 24.자 원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C

측으로부터 채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주장·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,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를 통해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라고 볼 수가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러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.

(2)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먼저, E가 D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는,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천종호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1. 토지

경남 양산시 소유소용지 892㎡.

2. 건물

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: 경남 양산시 호[도로명주소] 경남 양산시

위 지상 경량철골조 스테트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2.10㎡,

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.10㎡

경량철골조 스테트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.60㎡.

3. 건물

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: 경남 양산시 호[도로명주소] 경남 양산시

위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(샌드위치판넬)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9.2㎡

경량철골조 기타지붕(샌드위치판넬)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4㎡.